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6 선고 2021가단2090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제준, 정희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유상호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C가 2020. 1. 8.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를 121,994,9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1,994,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6474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3. “ 소외 C는 원고에게 86,577,085원을, ㉠ 2018. 5.부터 2023. 1.까지는 매달 1일에 1,500,000원씩, ㉡ 2023. 2. 1.에는 1,077,085원으로 총 58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잔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9. 1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소외 C는 2018. 5. 28. 1,500,000원, 2018. 6. 26. 1,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C가 변제한 금원을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다음과 같이 남게 된다.

다.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제10층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24. 접수 제97967호로 채권최고액 386,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같은 법원 2015. 7. 24. 접수 제9796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그런데 같은 법원 2020. 1. 9. 접수 제2518호 채권최고액 42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2020. 1.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지면서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2020. 1.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외

은행으로부터 35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과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 합계 357,924,126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전액의 변제에 상환하게 하였는바, C의 2020. 1. 8.자 대출의 실질은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C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한다. 즉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형식적, 실질적 소극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C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C의 대출은 그 실질이 대환대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대출에 관하여는 물상보증인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또한 피고가 모두 변제한 이상 C의 채무초과가 심화된 사실이 없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물상보증인 자격에서 소외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경우 변제에 따라 C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피고의 C에 대한 원상회복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C의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대출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3, 4,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 실행 이후 피고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직접 납입한 사실, 이후 피고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아 C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그에 따라 2021. 12. 22. 소외 은행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소외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출재로 인하여 모두 말소된 이상 채무자인 C의 자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단계로 회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있어 사해성의 요건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출재로 말소되었음에도 2020. 1. 8. 당시 C가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지급을 명한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말소된 C의 2번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채무초과상태의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